

제 호

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(의견 제출 통지)

(앞쪽)

귀
하

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부과 대상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과태료 금액		
과태료 부과 원인행위	일시	
	장소	
	내용	
적용 법령		
의견 제출 기한		
의견		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
경 찰 서 장

직인

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하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,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사실을 위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.

※ 과태료 감경 대상

 - ▶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▶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- ▶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 - ▶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외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- ▶ 미성년자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-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 기관

부 서 명		담 당 자	
주 소		전화번호	
전자우편주소		팩스번호	